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182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원상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9. 7. 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와 같다(소장에는 제1항은 '취소하라'로 되어 있고 제2항은 등기원인이 적혀 있지 않으나, 오기로 본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이건희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이천시 C 대 505m²
2. 경기도 이천시 C 지상 1동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1층 97.89m². 끝.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18. 1. 26. 소외 D 유한회사로부터 소외 B에 대한 채권 일체를 양수받은 자이고, 피고는 2019. 7. 7. 소외 B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만 합니다)에 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근거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동기소 2019. 9. 27. 집수 제4220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입니다(갑제1호증의1,2 참조).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의 발생

소외 B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소외 각 금융기관과 신용카드거래약정 또는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각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종류	약정일자	당초대출금	잔존채권액
제1채권	E 카드	신용카드	2000. 9. 1.	12,544,479	12,544,479
제2채권	F 카드	카드론	2003. 10. 10.	8,440,000	8,440,000
제3채권	F 카드	신용카드	2001. 4. 20.	5,700,000	5,700,000
제4채권	G 카드	신용카드	2002. 6. 24.	1,000,000	1,000,000
제5채권	H 카드 (구 I 카드)	신용카드	1995. 10. 4.	3,800,000	3,800,000

나. 채권의 양수도

위 채권의 금융기관은 소외 B에 대한 각 채권을 2005. 5. 13.자로 소외 D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소외 D 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B에게 2005. 6. 16.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갑제2호증 참조).

이후, 소외 D 유한회사는 2012. 7. 25. 소외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단9975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3. 7. 25. 자로 「피고는 원고에게 70,314,759원 및 그 중 31,484,479원에 대하여 201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은 2013. 7. 25. 자로 확정되었습니다(갑제3호증의1,2 참조).

위 판결 이후에도 소외 B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소외 D 유한회사는 소외 B에 대한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2018. 1. 26. 자로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소외 D 유한회사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20. 6. 23. 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소외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갑제4호증 참조).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갑제5호증 참조).

현재 2021. 9. 12.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소외 B에게 가지는 채권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종류	금액(단위:원)	비고
제1채권	원금	12,544,479	일부 상환에 따른 잔존 원금
	가치급금	171,800	

	이자 및 지연손해금	35,092,260	2021. 9. 12까지 발생 이자 및 지연손해금
	계 (청구금액)	47,808,539	
제2채권	원금	8,440,000	일부 상환에 따른 잔존 원금
	가치급금	114,900	
	이자 및 지연손해금	23,610,281	2021. 9. 12까지 발생 이자 및 지연손해금
	계 (청구금액)	32,165,181	
제3채권	원금	5,700,000	일부 상환에 따른 잔존 원금
	가치급금	77,500	
	이자 및 지연손해금	15,945,331	2021. 9. 12까지 발생 이자 및 지연손해금
	계 (청구금액)	21,722,831	
제4채권	원금	1,000,000	일부 상환에 따른 잔존 원금
	가치급금	2,200	
	이자 및 지연손해금	2,797,426	2021. 9. 12까지 발생 이자 및 지연손해금
	계 (청구금액)	3,799,626	
제5채권	원금	3,800,000	일부 상환에 따른 잔존 원금
	가치급금	27,796	
	이자 및 지연손해금	10,630,221	2021. 9. 12까지 발생 이자 및 지연손해금
	계 (청구금액)	14,458,017	
누계		119,954,194	

3. 사해행위

가. 관련 법리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는 경우에 한하여, 사해행위를 인정하고,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참조). 한편,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사안의 경우

소외 B의 부 소외 J의 사망 이후, 소외 B와 그의 모인 피고, 그리고 소외 B의 형제는 2019. 7. 7.자로 소외 B가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시점 당시 소외 B은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무자력의 상태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보면 소외 B이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취지로 피고 및 자신의 형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사해의사

대법원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채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사안의 경우, 원고는 채권을 양수받은 이후의 시점인 2018년 10월 경부터 소외 B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소외 B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외 B은 2019. 7. 7.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자신이 상속지분을 포기할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고 특히 원고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소외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소외 B과 함께 공동상속인이며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5. 소결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건 및 변제 등에 대한 문의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